양산 양우내안愛 파크뷰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기존 '청약제한 기간 3개월' → 변경 '청약제한 기간 1년으로 연장'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8.04.12.입니다.(무주택 기간, 나이, 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이경산업개발 심중화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2018.02.07에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03.27 개정)이 적용되오니,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강화 : 기존 '1 ,2, 3순위'방식을 '1, 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에서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에서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1, 2순위 모두 적용)
 –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요건 충족 시 당해 1순위 청약 가능) 다만,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거주요건(예 :3개월 또는 1년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볼 수 없음.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2017.10.18. 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7.01.20.시행) 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외국인 계약을 포함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부대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산시)은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을 모두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 전역,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양산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주택건설지역(양산시) 외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며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12.)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angwooparkview.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 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본 아파트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www.yangwooparkview.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 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8.03.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양산시 공동주택과-14281호(2018.04.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산55-15번지
▣ **대지면적** : 15,197.00㎡
▣ **공급규모** : 지하 1층 ~ 지상 20층, 아파트 6개동, 총 266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분 85세대(일반 특별공급 2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6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7세대)]
▣ **공급대상**

(면적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저층 우선 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민영주택	2018000572-01	84.9770A	84.9770	25.8191	110.7961	32.5535	143.3496	56.4875	156	15	15	15	4	107	9
	2018000572-02	84.7233B	84.7233	26.7667	111.4900	32.4564	143.9464	56.3188	110	11	11	11	3	74	6
	공급세대 합계								266	26	26	26	7	181	15

• 주택형 표기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9770A	84.7233B	비고
약식 표기	84A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동호 라인	층수	세대수	공급금액			공급대금납부방법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1차 계약시	2차 계약체결후 1개월이내	1차(10%) 2018.09.20	2차(10%) 2019.01.21	3차(10%) 2019.05.20	4차(10%) 2019.09.20	5차(10%) 2019.12.20	6차(10%) 2020.03.20	입주 지정기간
84A	101동 1,2호 102동 1,2호 103동 3호	1층	2	27,330,000	252,270,000	279,600,000	10,000,000	17,960,000	27,960,000	27,960,000	27,960,000	27,960,000	27,960,000	27,960,000	83,880,000
		2층	5	27,330,000	255,870,000	283,200,000	10,000,000	18,320,000	28,320,000	28,320,000	28,320,000	28,320,000	28,320,000	28,320,000	84,960,000
		3~4층	10	27,330,000	259,170,000	286,500,000	10,000,000	18,650,000	28,650,000	28,650,000	28,650,000	28,650,000	28,650,000	28,650,000	85,950,000
		5~9층	25	27,330,000	262,070,000	289,400,000	10,000,000	18,940,000	28,940,000	28,940,000	28,940,000	28,940,000	28,940,000	28,940,000	86,820,000
		10~14층	25	27,330,000	264,970,000	292,300,000	10,000,000	19,230,000	29,230,000	29,230,000	29,230,000	29,230,000	29,230,000	29,230,000	87,690,000
		15층 이상	19	27,330,000	267,870,000	295,200,000	10,000,000	19,520,000	29,520,000	29,520,000	29,520,000	29,520,000	29,520,000	29,520,000	88,560,000
84A	104동 1,2호 105동 1,2호	1층	2	27,330,000	249,370,000	276,700,000	10,000,000	17,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83,010,000
		2층	4	27,330,000	252,970,000	280,300,000	10,000,000	18,030,000	28,030,000	28,030,000	28,030,000	28,030,000	28,030,000	28,030,000	84,090,000
		3~4층	8	27,330,000	256,170,000	283,500,000	10,000,000	18,350,000	28,350,000	28,350,000	28,350,000	28,350,000	28,350,000	28,350,000	85,050,000
		5~9층	20	27,330,000	259,170,000	286,500,000	10,000,000	18,650,000	28,650,000	28,650,000	28,650,000	28,650,000	28,650,000	28,650,000	85,950,000
		10~14층	20	27,330,000	262,070,000	289,400,000	10,000,000	18,940,000	28,940,000	28,940,000	28,940,000	28,940,000	28,940,000	28,940,000	86,820,000
		15층 이상	16	27,330,000	264,970,000	292,300,000	10,000,000	19,230,000	29,230,000	29,230,000	29,230,000	29,230,000	29,230,000	29,230,000	87,690,000
84B	103동 1,2호 106동 1,2,3,4호	1층	6	27,250,000	242,350,000	269,600,000	10,000,000	16,960,000	26,960,000	26,960,000	26,960,000	26,960,000	26,960,000	26,960,000	80,880,000
		2층	6	27,250,000	245,950,000	273,200,000	10,000,000	1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81,960,000
		3~4층	12	27,250,000	249,250,000	276,500,000	10,000,000	1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27,650,000	82,950,000
		5~9층	30	27,250,000	252,150,000	279,400,000	10,000,000	17,940,000	27,940,000	27,940,000	27,940,000	27,940,000	27,940,000	27,940,000	83,820,000
		10~14층	30	27,250,000	255,150,000	282,400,000	10,000,000	18,240,000	28,240,000	28,240,000	28,240,000	28,240,000	28,240,000	28,240,000	84,720,000
		15층 이상	26	27,250,000	258,050,000	285,300,000	10,000,000	18,530,000	28,530,000	28,530,000	28,530,000	28,530,000	28,530,000	28,530,000	85,590,000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구 분	84.9770A	84.7233B	계
만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다자녀 관련 우선배정	9	6	15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상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주택법시행령 제60조]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신탁등기 말소 포함),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주택형별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의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수점 이하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청약 신청시 반드시 위 표의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에도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시 공유대지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검색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사실 삭제 및 청약통장 부활이 허용될 수 있으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2016.11.15.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예정으로서 추후 분양 예정이며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계획(배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리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은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받으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은행의 익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정해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배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평]란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시기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셔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구 분	대상자	주 택 형	
		84.9770A	84.7233B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기관추천자 등	15	1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미성년자녀수가 3명 이상인 자(태아 포함)	15	11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신고일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자(태아도 가능)	15	1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연속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	4	3
합 계		49	36

■ **특별공급 공통사항 –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12.)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으로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 분	신청일자 및 시간	당첨자 선정 일시	장소
일반 특별공급(기관추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018.04.17.(화) (10:00 ~ 14:00)	2018.04.17.(화) (17:00 이후)	당사 견본주택 (양산시 덕계동 714-11번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노부모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이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당첨자 선정일자와 시간을 인지하여 당첨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일반 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특별공급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건만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 세대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므로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의 횟수는 한차례에 한정하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완화되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접수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당첨 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에 대한 당첨은 무효로 합니다.
• 별도의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의 경우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첨자로 간주하며,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자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를 제외함]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지역별 / 면적별 기준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청약통장 없이도 특별공급을 위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 26세대)**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양산시)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양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잔여 물량 발생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공급신청자 중 선정된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기타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 대상기준 및 청약 경쟁률이 1:1을 초과할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대상은 해당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전체이며 추첨시 우선 해당 관계기관별 인원 배정 추첨을 선행하고, 배정된 추첨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는 관계기관은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배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총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 2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양산시)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단, 양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잔여물량 발생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공급신청자 중 선정된다.]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7호(2018.02.26.)) 참고하시기 바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개정 2016.11.15.)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회, 일반공급 1회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하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 시 기타지역 거주 공급신청자 중 당첨자를 선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 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우선순위 배점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7호를 준용함, 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해당 사항	비 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미만(출생자 및 태아를 포함)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미만(출생자 및 태아)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5		
		무주택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0		
		1년 이상~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 의 사 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 2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양산시)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 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 제3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동일 순위 경쟁이 있을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전년도(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 분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02,590원 이하	5,846,903원 이하	5,846,9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6,003,108원 이하	7,016,284원 이하	7,016,284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소득 기준은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함)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하는 사람 포함)의 합산입니다.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공급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 수를 포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를 규정.
① 1순위 :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② 2순위 : 혼인 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한 자녀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합니다.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자녀수로 인정합니다.(임신진단서로 임신사실 확인)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총 주택 건설량의 3% 이내 / 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양산시)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경쟁이 있는 경우 양산시에 거주한 자에 우선 공급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 합니다.
–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순의 공급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지역 내, 동일 가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공급 청약 가점기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7호(2018.02.2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 공급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12.) 현재 주택건설지역(양산시)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양산시 거주자를 우선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공급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 공급에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에 가입한 분 중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 전에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 금융결제원(국민은행 포함)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舊주택은행포함)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 인터넷 청약
이용대상	– 1, 2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신청 구분	청약관련 예금 및 신청자격	거주 구분	접수 일자	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 청약 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청약 접수함(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됨.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양산시 /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2018.04.18. (수요일)	• 접수장소 : 인터넷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08:00~17:30	• 일시 : 2018.04.25.(수요일) • 장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당사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게시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 등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으로 인해 응대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2순위	전 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추첨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금·부금 포함)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인 분]		2018.04.19. (목요일)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예금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및 노약자,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할 경우 참가은행 거래 지점에서 접수 가능합니다.(단, 1순위 및 2순위 접수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접수시간:09:00~16:00)
 또한, 2순위 인터넷 청약 접수자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에 계좌 개설 후 청약에 참여 가능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APT2you)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 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표 중 접수시간의 17: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접수 중이라도 접수 완료되지 않고 17:30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구 분	양산시 /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전체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관련 예금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 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신청가능 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해당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주택의 규모를 상향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면적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주택공급 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시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을 확인)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 시 부양가족 수 산정) · 신청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총 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 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 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 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상기 기재사항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해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3.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비 고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2018.04.17.(화) 10:00~14: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양산 양우내안애 파크뷰 견본주택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714-11번지)	
일반공급	1순위	• 2018.04.18.(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신청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2순위	• 2018.04.19.(목) 08:00~17:30			

※ 특별공급 공급신청자 과밀로 인하여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 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공급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청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인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 ~ 16:0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신청 접수 방법**
•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일반공급
–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공급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합니다.
※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6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2순위 : 공급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해 당 서 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①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본인	• 견본주택 비치양식 사용 • 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요망
	○		③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④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
		○	⑤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요망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 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 만으로 입증이 안 될 경우 제출
		○	⑥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⑥,⑦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⑦ 제출
		○	⑦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⑧ 청약통장가입(순위)확인서	본인	• 금융결제원 청약홈페이지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 제외(그 외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출)
		○	⑨ 제3자 대리인 서류	본인 / 대리인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대리 신청자의 도장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함(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 불가)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 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③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④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⑤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	⑥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 부모 가족으로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⑧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 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접수 장소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③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⑤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 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접수장소에 비치
		○	⑦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접수장소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⑨ 소득증빙 구비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 부양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 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 된 경우
		○	③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①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②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③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④ 주민등록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⑤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날인 필요.

• 신혼부부 소득증빙 서류

해 당 자 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 급 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영계획 별지서식 2)	* 접수장소

※ 소득입증서류 및 기타유의사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638호, 2015.12.29.)을 참조하시기 바람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 공급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	• 일시 : 2018.04.17.(화) 17시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일시 : 2018.04.25.(수) • 확인방법 : 당사 홈페이지 (www.yangwooparkview.co.kr),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일시 : 2018.05.08.(화) ~ 2018.05.10.(목) (3일간, 10:00 ~ 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714-11)
일반 공급	1순위	• 일시 : 2018.04.25.(수) • 확인방법 :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모바일(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 공급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동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8.04.25.(수) ~ 2018.05.04.(금) (10일간)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조회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8.04.25.(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0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입주자 선정 발표 일시 : 2018.04.25.(수) 동·호수는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으로 추첨합니다. (단, 금융결제원의 일정에 따라 발표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신청대상자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 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 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수 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공급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가 일반 공급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일순위 공급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서 거주한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합니다.

■ **예비 당첨자 유의사항**
•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2017.09.2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동 사유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의 당첨자로 인정되며, 기 당첨된 주택의 당첨사실은 무효처리됨)
※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예비입주자에게 별도의 추첨참가 의사표시를 공지하지 않으므로 추첨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입주자는 꼭 정당계약일 종료 전에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참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5.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1) 유의사항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18.05.08.(화) ~ 2018.05.10.(목) 3일간(10:00 ~ 16:00 까지)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아래 계좌로 직접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당사 견본주택에서 계약 체결합니다.
• 당첨 후 계약 기간(2순위자 포함)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며,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 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2)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당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분양)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 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201호 – '1010201' / 102동 301호 – '1020301')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신협	131–019–537587	대한토지신탁(주)

3)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공통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 대리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접수 장소에 비치), 인감도장(계약자),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도장
	일반(기관추천)/ 다자녀/노부모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또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사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단지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 비산분진, 소음 등 포함), 차량 전조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소음 및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 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중당첨자 또는 부적격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이 취소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이의를 사업주체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약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2016년 10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분양주택으로 2016년 10월 1일 발효된 경제정책 방향 중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 보증제도 개선"에 따라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권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른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대출은 계약 완납 후 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나,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신청일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당사가 통보하는 일시에 대출신청 하여야 하며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제반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서 발급기준에 따라 발급에 제한을 받을 경우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 아파트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도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추후 타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에 제한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입주자 사전 방문 실시**
•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 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점검입니다.

■ **입주 예정시기**
• 입주예정일 : 2020년 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운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 **분양형토지신탁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이경산업개발 심중화가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이경산업개발 심중화이고, 양우건설(주)는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 의무를 부담하며, 대한토지신탁(주)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대한토지신탁(주)가 지정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이경산업개발 심중화 및 시공사 양우건설(주)가 연대하여 책임지며, 매수인은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이경산업개발 심중화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이경산업개발 심중화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 매수인이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 발코니 확장 및 무상옵션, 마이너스 옵션

■ **무상 옵션**
• 발코니 확장 공사(무상 시공)

구분	84.9770A	84.7233B
발코니 확장 공사비	무상 시공	무상 시공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시 무상 제공품목

주택형	제공품목	비고
84A, 84B 공통	천장형에어컨(거실 1개소 + 안방 1개소), 세대내부 LED조명, 이동식 인덕션(1구)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시 무상 제공
84A만 해당	펜트리 또는 알파룸	
	침실1, 침실2 가변형 벽체	

※ 84A 알파룸 선택시 시스템선반은 미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 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시 제공품목의 상세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라며, 향후 본 시공시 제품의 상세사양 및 제조사, 모델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시 제공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 여부는 시공 상의 이유로 지상층 골조작업 시작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84A 타입의 경우,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후 펜트리 대신 알파룸 선택시, 거실 식탁등의 설치 위치가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식탁등 위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단창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외기실의 경우 그릴로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라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 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되어 발코니 천정 높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비확장 세대는 입주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하부층이 확장 세대일 경우, 하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바닥에 단열재가 설치되어 발코니 바닥 높이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확장 세대는 입주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인접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에는 확장 세대와 비확장 세대 사이의 경계벽 일부분의 단열 조치를 위하여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에 단열재가 설치되어 발코니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재	바닥마감재(마루, 타일, 대리석, 걸레받이 포함)	바닥 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현관디딤판 및 현관굽도리 (신발장/ 현관장 하부 제외)
벽, 천장재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타일), 주방타일, 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벽석고보드(해당부위), 콘크리트 면처리(해당부위), 천장틀 위 석고보드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매입등 제외)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등), 매입등기구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액세서리, 욕실수전, 욕실장, 샤워부스 등 마감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슬리브, 전기, 통신배관 배선
주방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가스쿡탑, 광파오븐, 주방액정 TV	소방관련 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창호	창호(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현관문, 대피공간문
가구류 및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신발장, 시스템가구 등 가구류일체	설비배관(단부보호 처리), 거실 월패드

※ 형별 및 타입별 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아래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주택형(주거전용면적)㎡	84.9770A	84.7233B	비 고
마이너스 옵션금액	14,900,000	14,850,000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공사 선택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급금액 총액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에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 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신청지침 제3조 규정의거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 시공사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 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생략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호수를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7. 기타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 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 [가점제 적용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 / 수도권 외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만을 소유한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으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의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동영상등은 분양 홈페이지(www.yangwooparkview.c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 당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 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다로그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본 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당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등 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등 주변시설현황, 조망권, 주변개발여건, 유해시설현황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트월과 쇼파 설치 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발코니에 비상시 대피를 위한 하향식 피난구(사다리포함)가 설치될 예정이며(84A 타입 한정), 세대 및 층별 바닥 및 천정에 대피구 위치가 상이하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식재, 시설물, 가부채납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등은 실시공사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평면, 입면,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2째 자리로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 인허가청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예정 주택이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내외 (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상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 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장건물,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골프장, 쓰레기소각장, 철탑, 송전선로, 단지외부 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 (도시계획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음 • 학교 배정은 해당 교육청이 담당하며, 초등학생은 인근 웅상초등학교, 중학생은 17학교군내 중학교에 수용할 예정임(구체적인 사항은 양산시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 • 과속방지턱·인도 확보(안전펜스 설치)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한 통학여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임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 승인도서(사업계획변경승인 포함)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입주 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택지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건축물에 대해 입주예정자가 공사과정에 대한 참여로 궁금한 사항 해소,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본 사업장은 도시가스 공급예정이며, 별도의 정압기는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명칭 및 단지 내 시설물 명칭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포함), 단지 홍보용사인물, 놀이시설,휴게시설,운동시설,포장시설,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 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음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는 84㎡A, 84㎡B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주택형에 대하여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 이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하여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함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평면구조상 동일한 주택형(타입)이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대한토지신탁(주)"와 "이경산업개발 심중화"간에 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되는 경우 본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 관리와 "대한토지신탁(주)"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이경산업개발 심중화"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
단지 외부 여건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 아파트 진·출입 도로(인도보도 포함), 단지 외부(경계) 도로 및 도로 선형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계획승인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함(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당 사업지 주변의 인접건축물(기존 및 신축 건축물 등)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사전에 사업 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단지환경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 불편, 일조, 조망,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주출입구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는 대로1-2호선(36m)에서 우회 및 대로3-12호선(25m)에서 유턴을 하여야 함 • 사업지 남측으로 송전탑(선로명 : 345kV 북부산-신울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송전탑과 가장 근접한 106동은 약 30m 거리로 이격되어 있으니, 계약 전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변으로 대로1-2호선(36m) 및 대로3-12호선(25m) 등 도로가 인접되어 있어 교통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마감재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재질, 색상, 크기 및 길이(가구 포함), 형태, 적용 이미지 등이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됨 • 내외부에 천연자재가 적용되는 경우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 중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가구가 설치되는 천장, 바닥(난방 포함), 벽체에는 마감재가 미적용 됨.
견본주택 / 홍보물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일정기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분양승인 신청서류 기준)과 전시품(조명, 가구, 소품 등)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분양승인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선홈통, 배수구, 점검구, 하향식 피난구, 스프링클러,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온도조절기, 수전류, 천정형에어컨, 아일랜드식탁 인덕션(1구), 부부욕실 비데, 복합오븐, 레인지후드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이동식가구, 소품 등 전시(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설계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 용
일반사항		• 분양계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다로그, 분양 계약서, 모형,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CG, 평면의 치수, 면적, 가구배치 등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승인변경을 포함한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임함 • 공사 중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옥외계단 및 캐노피 포함),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건물 색채), 색채를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 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 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경비실, 주차 게이트, 도로선형변경 및 기타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 • 기부 채납하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보행통로 등은 착공 후 지자체 심의 또는 협의과정 중 도로 선형, 식재수종 및 규격, 수량, 조경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 포장재, 담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외부도로의 폭은 인접 건축물, 보도 등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형이나 조감도 등 각종 홍보 자료의 단지 외부 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적용시) 유지, 단지내로 편입된 보도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항,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인접세대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 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된 인접 동은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냉난방시설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별도 분양시설) 과 인접한 일부 동은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냉난방 시설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동은 옥상에 공동시청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채광창 유무 포함) 등 공용부분은 공간 크기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대지 안의 공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임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분양 이후 위치 및 내용이 확정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양홍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 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보일러 등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휀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 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공통사항	• 본 계약물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단지주변 경계부는 현장 시공여건, 현황 레벨, 인근 도로레벨에 따라 단차부 마감에 대한 형태, 재질 등이 실시 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열주, 도로선형변경, 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동별 주차 배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 할 수 없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상가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내 외부에 계획된 부지레벨차이에 의한 각종 옹벽 및 조경석은 당사 디자인 계획변경에 따라 일부 수정 될 수 있음 • 공공의 목적으로 통행되는 필로티 상부세대는 소음피해, 사생활피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배치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 관리동,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기타 유사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지상 주차장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또는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인근 단지, 주변도로 및 시설 등과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동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및 위치,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동 저층부의 석재·롱칩마감 모듈 및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 및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골조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로비(E.V홀), 피로티, 평, 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1층 로비(E.V홀)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폭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층 상부에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 입면 형태(옥상조형물, 측벽문양, 저층부 석재, 동 출입구) 및 색채는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됨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됨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경사 처리구간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정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됨 • 지하 주차장 천정의 일부 구간은 열 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구조안전공간,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야간경관조명 설치시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상승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부대시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내외부 디자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외부 마감재, 내외부 디자인, 평면 형태 및 구조, 창호재질 및 사양 등은 설계변경 또는 시공상의 이유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01동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207동 계단실(지하1층/지상1층)은 단지내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계단이므로 아파트 부대시설에 포함됨
단위세대	공통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설치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 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미관상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소비자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는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내부 벽 및 세대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함.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동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의 경우 세대 통합 분전반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 사다리는 화재 시 긴급하게 아래층으로 피난하기 위한 용도로 세대당 바닥에 1개소가 설치되며, 충마다 위치가 상이함. 피난사다리의 뚜껑을 열면 홈네트워크를 통해 단지 내 통합방재실로 통보되며 1회 개방 후에는 집급 부속 등 소모품을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설치 하여야 함(84A 타입 한정) •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화재 시 하층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방수 기능 없음 등)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84A 타입 한정) • 세대 발코니 내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변경 시공이 불가하고, 주변에 세대 기타 물품을 적재하여 뚜껑 개폐나 피난 시 간섭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 시공됨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엘리베이터 홀에 창호가 없어 채광 및 환기가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카탈로그 및 도면을 확인하셔야 함 • 거실, 안방 등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 공급받아야 함 •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선홈통의 개소 및 위치는 실시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 및 상부세대가 비확장시에는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해 벽체돌출 및 우물천장 깊이가 감소될 수 있음 • 세대내 가구, 가전 및 도기의 모양, 재질,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이상의 제품)설치여부는 계약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및 발코니 바닥마감 레벨은 설계 치수로 실시공시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드레인은 실제 시공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은 견본주택 내용에 따르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전반, 통신 단자함,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 실외기실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거나 급수가 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부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에 설치되는 덕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음
	창호	•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전체 고정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외부 석재 마감 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아부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도어재질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실외기용 그릴창호는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을 통해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주방에 면하는 발코니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
	전기 / 설비	• 세대내 통합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신발장 가구)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하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의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 배수구의 설치여부, 위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의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구 분		적 용 여 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	고기밀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은 기밀성능 1등급 제품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보일러/전동기/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침실/주방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1개소에 설치(세대)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설치(세대)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일부, 공용부 일부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공용부)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 리 회 사	감리금액(원)	비 고
건 축	(주)지앤에이건축사사무소	₩887,617,670.-	부가가치세 포함
전 기 / 통 신 / 소 방	(주)선한이엔지	₩77,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 **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분양보증 내용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53,182,850,000.-	제 01282018-101-0004300 호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범위, 보증제외 대상**
ㅇ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ㅇ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ㅇ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위탁자
상 호	대한토지신탁(주)	양우건설(주)	이경산업개발 심중화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0(영등포동6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 446, 3층(잠실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492513	110111-0618194	사업자등록번호 : 621-22-47425

■ **분양 홈페이지** : http://www.yangwooparkview.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714-11번지
■ **분양문의** : 1800-490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분양 문의 : 1800 - 4900